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53

발의연월일: 2020. 12. 28.

발 의 자:윤미향·권인숙·김경만

김승원 • 민형배 • 양이원영

유정주・윤준병・이규민

이수진(비) · 이 학영 의원

(11일)

제안이유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센서 등을 활용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가 제작·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정밀도·정확도가 낮은 측정기기들을 공공데이터 개방 등 일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침해 및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식승인과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중 센서 등을 활용하는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

- 기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간이측정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 신설).
- 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업무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에 대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5조).
- 다.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한 경우 일 정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1항).
- 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에 대하여 간이측정기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28조제2항).
- 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
- 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 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2항).

법률 제 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형식 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 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의 제작자등은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간이측정기 제작자등에게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 2.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기기, 기준·방법 및 절차, 사용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도검사"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정도검사"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도검사성적서"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정도검사성적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정도검사"를 각각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한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 에 관한 업무를 지연한 경우

제15조 중 "정도검사"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의 규정"을 "제12조"로 한다.

1의2. 제9조의3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제2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제3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제32조제1호 중 "정도검사"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간이측 정기 성능인증을 받은 자
- 제35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던 자는 이 법 시 행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9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 중 센서	
	형 측정기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이하 "간이측	
	정기"라 한다)의 제작자등은 환	
	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u>한다.</u>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간이측정기 제작자등에게 해당	
	<u>간이측정기에 대한 회수·폐기</u>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u>을 받은 경우</u>	
	2.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	
	상기기, 기준·방법 및 절차, 사	
	용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u>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1 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 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 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

제	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u>환경부장관은 제9</u>
	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
	<u>인증, 제11조 및 제12조</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u>
	도검사
제	14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 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한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u>정</u> <u>도검사성적서</u> 또는 검사성적 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신 설>
- 5. · 6. (생략)
- 7.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8. 업무정지기간 중 <u>정도검사</u>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한 경우
- ② (생 략)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환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1.·2. (현행과 같음) 3
<u>간이측정기</u> 성능인증, 정도검사
4 3h
<u>=</u>
이측정기 성능인증서, 정도검
사성적서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간이측
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지연한
<u>경우</u>
5. · 6. (현행과 같음)
7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 사
<u>-</u> 8 <u>간이측정기</u>
성능인증, 정도검사
② (현행과 같음)
15조(건사대해기로의 ㅂ조)

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환경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정도검</u>
<u>사</u>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
간 기록 • 보존하여야 한	다.

제28조(사후관리) ① (생 략)

-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수있다.
- 1. <u>제9조의 규정</u>에 따라 측정기 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u><신 설></u>
- 2. <u>제12조의 규정</u>에 따라 교정 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하는자
- 3. ~ 6. (생략)
- ③ ~ ⑤ (생 략)

<u>간이측</u>
<u>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u>
· 세28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
<u>⇔</u>)
2
<u>.</u>
1. <u>제9조</u>
1의2. 제9조의3에 따라 간이측
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u>자</u>
2. <u>제12조</u>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다.

1. (생략)

<신 설>

2. ~ 5. (생략)

제3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3. ~ 8. (생략)

② (생략)

-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 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13조에 따라 <u>정도검사</u> 및 검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임직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간
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2. ~ 5.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수료) ①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간</u>
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으려
<u>는 자</u>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1 <u>간이측정기 성</u>
<u> 능인증, 정도검사</u>

워

2. (생략)

제33조(벌칙)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5. (생략)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의2. (생 략)

<신 설>

3. ~ 7. (생략)

③ (생 략)

__

2. (현행과 같음)

제33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은 자
- 2. ~ <u>6.</u> (현행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
- _____

-----.

- 1. ~ 2의2. (현행과 같음)
- 2의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 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 지 아니하고 간이측정기를 제 작 또는 수입한 자
- 3. ~ 7.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